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78,800,000	35,364,000
일반회계		1,081,800,000	32,454,000
특별회계		97,000,000	2,910,000
	공기업특별회계	75,000,000	2,25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8,600,000	1,15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400,000	1,092,000
	기타특별회계	22,000,000	66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7,549,000	226,4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31,000	87,93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307,000	9,210
	치수사업특별회계	1,872,000	56,160
	주차장특별회계	9,341,000	280,2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321,787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8,000,000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881,787천원
(3) 내부유보금 3,440,000천원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